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 체육공원 내 구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안 제3조)
- 나. 사용허가 및 신청 (안 제5조)
- 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안 제8조)
- 라. 사용시간 (안 제9조)
- 마. 사용료 등 (안 제10조)
- 바. 위탁운영 (안 제14조)
- 사. 시설물관리대장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구미낙동강체육공원”이란 구미시 자산동에서 고아읍에 이르는 낙동강 둔치 우안 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시설”이란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에 행사의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미시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이용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별표 2의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나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사용허가를 신
청한 경우에는 추첨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이용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시간	06:00~19:00	06:00~18:0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의 천재지변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자 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

5. 구미시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구미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상복구 등) ①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말미암아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설물관리대장) 시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사용료 등)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제2조 관련)

구분	이용시설
체육시설	축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및 장비,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이동식), 자전거(보관소), 전기·방송·조명시 설, 음수대, 파고라, 휴지통, 관찰(전망)데크, 쉼터, 의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조경시설	생태공원(탐방로·학습장), 수생식물원 야생화단지 연꽃단지 잔디밭, 유채단지, 숲·꽃단지, 산책로, 초화, 습지,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관을 제공하는 시설
기 타	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 설치한 시설

[별표 2]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평일	토·공휴일	
축구장	1면(3시간)	50,000	75,000	잔디 구장
야구장	1면(4시간)	30,000	45,000	
풋살장	1면(1시간)	10,000	15,000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주소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면제사유 ※ 증빙서류 첨부					
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비고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10mmx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이용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 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 명)		
	주소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사용료			
허가조건			
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비고			

210mmx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 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주소								
신청사항		당초				변경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 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 명)	
	주소	
신청사항	당초	변경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사용료		
허가조건		
기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210mmx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허가번호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주소				
이용일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대회(행사)명					
반환신청사유					
사용료 납부액			사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시 설 물 관 리 대 장					
시설명 :					
위치	개수	규격	면적(수량 등)	설치 연월일	비고
관리내역					
정비기간	정비내용		시설증감 내역	비고	

(뒷쪽)

현황사진

위치도면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관리(각종 공과금) 운영비(인건비) 세출 발생
-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사용료에 따른 세입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과금,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가산하여 추계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0조(사용료등)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설사용료	527,880	527,880	527,880	527,880	527,880	2,639,400
	소계(a)	527,880	527,880	527,880	527,880	527,880	2,639,400
세출	공공요금	4,880	4,880	4,880	4,880	4,880	24,400
	시설유지관리비	983,000	983,000	983,000	983,000	983,000	4,915,000
	인건비	540,000	540,000	540,000	540,000	540,000	2,700,000
	소계(b)	1,527,880	1,527,880	1,527,880	1,527,880	1,527,880	7,639,400
□ 총 비용(a-b)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도 비						
시 비						
민 간						
기 타						
합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5. 부대의견

- 세입(시설사용료) 및 세출(시설 관리 운영비)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건설도시국 건설과 서지원(480-538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예산

- 시설사용료 (단위 : 천원)

시 설 명	평일사용료	공휴일사용료	합계(천원)
축구장	120,000	252,000	372,000
야구장	21,600	22,680	44,280
풋살장	36,000	75,600	111,600
계	177,600	350,280	527,88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시 설 명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합 계
구미낙동강 체육공원	4,880	983,000	540,000	1,527,880